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4나2031460 판결 [보증금 지급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선고 2014나2031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가합5030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피고, 항소인 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2. 25.

판결 선고 2015. 3.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가합5030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19,906,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3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란 기재 중 제2면 제20행의 "725,160,000"을 "725,160,000원"으로, 제4면 제5행의 "4,949,604원"을 "4,946,604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TX건설이 2013. 7. 22.자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공동수급사 간의 출자비율 변경에 합의한 후 발주자인 원고의 승인을 받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으로써 STX건설은 더 이상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포기시까지 정산되지 않은 이 사건 선급금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의 범위

- 1) 원고가, 미정산선급금으로 120,36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8. 제1회 기성검사일 이후 STX건설이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출자비율을 0%로 변경한 2013. 7. 22.까지 STX건설의 기성대금은 STX건설의 실제 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공동수급체의 기성금액 중 STX건설의 변경 전 출자비율인 30%에 의하여 산정한 247,701,096원이 되므로, 위 기성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이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다49395 판결 참조).
- 3)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STX건설은 정인종건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함양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인인 정인종건과 함께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2013년 4월경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 STX건설의 지분비율은 30%로서 STX건설이 이 사건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출자비율을 0%로 변경한 2013. 7. 22. 당시 STX건설의 기성공사대금은 247,701,096원인 사실, 그 당시까지 원고가 STX건설의 하도급인들에게 직불한 하도급대금이 35,099,700원 정도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2013. 7. 22. 당시 STX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212,601,396원(= 247,701,096원 - 35,099,7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STX건설의 선급금 217,548,000원 중 미정산 선급금은 4,946,604원(이 사건 선급금 217,548,000원 - STX건설이 가지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212,601,396원)이 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STX건설이 2013. 7. 22. 이 사건 잔여공사를 포기하면서 도급인인 원고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정인종건과 사이에 STX건설의 기성대금을 97,185,000원으로 정산하고 STX건설의 지분을 당초 30%에서 4.02%로 변경하면서 위 기성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STX건설의 미정산 선급금은 120,363,000원(= 이 사건 선급금 217,548,000원 - 기성금 97,185,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의 총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선급금의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선급금반환채권 및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참조).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제5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공사대금을 변경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344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STX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STX건설의 지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급금반환의무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책임도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분변경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분변경약정이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보증금으로 4,946,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원리금으로 합계 5,223,88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4. 9. 3. 피고로부터 합계 119,906,56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박연주

판사정동혁